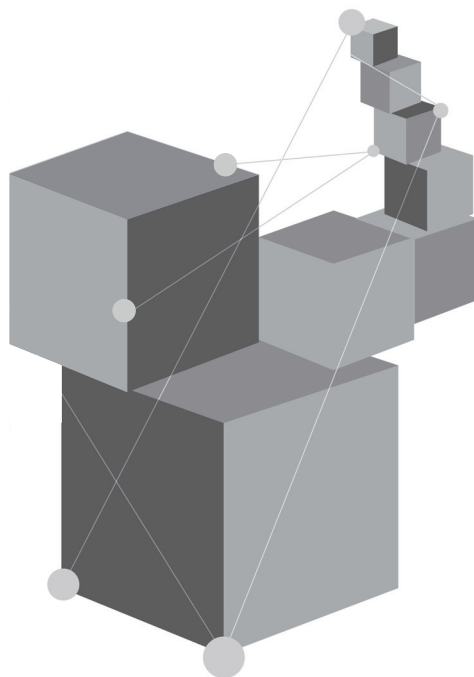


명예와 신용 존중



1.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 2012-1205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2년 10월 31일자 11면 「떠들썩했던 ‘해외 청부살인 사건’/박칼린 언니, 美서 청부살인 혐의 재판/구찌 3대 회장, 전처의 살인교사로 사망」 제목과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모의 뮤지컬 음악 감독의 가족이 냉혈한 청부살인업자로 드러났다. 영화 속이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최근 박칼린 음악감독의 친 언니 박켈리가 미국에서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세기를 뒤흔든 냉혹한 청부살인 사건들을 짚어본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문화일보가 1개 지면을 할애해 제작한 ‘늘어나는 청부살인’이라는 주제의 기획기사다. 주 기사는 「‘청부 살해’ 작년에만 14건 … “영화속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며 위 기사는 관련 부속 기사다.

위 기사는 국내에서 음악감독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박칼린의 언니가 미국에서 청부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의 도입부분에서 밝히고 제목에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박칼린의 언니 박켈리의 범죄 혐의와 박칼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다. 더욱이 그 범죄 혐의는 잔인무도한 청부살인이다. 따라서 기사 본문과 제목에서 박칼린을 언급한 것은 박칼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 현재 박켈리는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미모의 뮤지컬 음악 감독의 가족이 냉혈한 청부살인업자로 드러났다.』고 기술, 박켈리를 ‘냉혈한 청부살인업자’로 단정하였다. 이는 박켈리의 보호되어야 할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보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신문의 명예 또한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3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11월 22일자 9면 「풀무원 대주주 장녀 파산신청 논란/ 남편과 사업 위해 개인돈 40억 빌려 … 채권자 “고의적 채무회피” 이의신청」 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1월 23일자 A2면 「풀무원 대주주 장녀가 파산신청한 까닭은/전 남편과 투자 자금 40억 빌려/채권자 “고의적 회피” 이의신청」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 『상장기업 풀무원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남승우 총괄대표이

사 사장의 장녀 남밤비(37) 씨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 씨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는 “남 씨가 4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결정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5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남 씨는 전 남편인 박모 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 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 씨가 운영하는 전자직접회로 제조업체 네이처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네이처글로벌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장폐지됐다.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돼 궁지에 몰린 남 씨 부부는 담보 제공과 이자 납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정 씨는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씨는 남 씨 부부가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차용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부라고 속인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어서 검찰에 기소중지돼 있다. 남 씨 역시 전 남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검찰에 참고인 중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남 씨가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파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파산법을 악용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남 씨는 박 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파산 신청을 위해 법률대리인조차 적지 않은 수입료가 지출되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풀무원홀딩스의 최대주주 남승우 총괄대표의 장녀 남밤비 씨(37)가 최근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 측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남씨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는 “남씨가 4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결정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5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남씨는 전 남편인 박모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씨가 운영하는 전자직접회로 제조업체 네이처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네이처글로벌은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장폐지됐다.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돼 공지에 몰린 남씨와 박씨는 담보 제공과 이자 납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정씨는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두 사람이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차용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부라고 속인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주장한다. 박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돼 있다. 남씨는 박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파산신청을 위해 거액의 수입료를 내야 하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또 “남씨는 박씨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파산신청을 위해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은 (숨겨 놓은) 재산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무원 측은 “회사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알지 못한다”며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씨는 남씨가 청구한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했으며 22일 집회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측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남씨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채권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풀무원홀딩스 최대주주인 남승우 총괄대표이사의 장녀인 남밤비 씨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위를 상세히 다루었다.

기사에 따르면 남씨는 이혼한 남편 박모 씨와 함께 2010년 4월 박 씨가 운영하는 전자직접회로 제조업체의 유상증자 참여를 명목으로 정모 씨에게서 40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업체가 횡령 및 배임사건으로 상장폐지되는 등 궁지에 몰리자 박 씨는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고, 이에 정 씨는 남 씨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았고, 정 씨는 “채무 40억 원을 회피하려고 파산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이 기사의 개요다.

형사와 민사 사건이 뒤엉킨 이번 사건에서 핵심 당사자는 해외로 도피한 업체 대표 박 씨다. 이혼한 부인 남 씨는 사기사건에서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고, 기사에서 제기된 남 씨 주변과 파산신청 등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은 채권자인 정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위 기사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다루려면 남 씨의 해명이나 반박을 들어 반영했어야 하는데 기사에는 그 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건에 남 씨의 아버지인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가 관련됐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남 대표를 기사와 제목에 등장시킨 것은 남 대표와 풀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 ⑥(피의사실의 보도),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80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주 문〉

中都日報 2013년 2월 26일자 15면 「'뇌물의 제왕' 삼성직원 또 쟁겼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수억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직 삼성전자 사원이 천안지역 관련 협력업체에 사장으로 영입돼 비난을 사는 가운데 같은 회사 전 간부가 거액의 뇌물을 챙기다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천안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임현)는 공사수주를 청탁한 천안의 S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삼성전자 전 수석엔지니어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천안 S사 대표 B씨에게서 삼성전자 자동차 물류설비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 통장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의 계좌추적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자체감사를 벌여 A씨를 고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사원 B(38)씨가 최근 천안지역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돈을 건넨 협력업체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문제의 사원을 사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관련 업계는 그동안 문제의 사원이 현직 삼성과의 간부나 동료 등을 이용해 삼성과의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B씨는 2011년 3월에서 2012년 5월까지 C협력업체와 D사의 법인카드를 받

아 매달 수백만원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협력업체는 B사원에게 지급한 현금 2억4000여만원 등 모두 5억6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천안과 아산 지역 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관련 회사가 준비해 있다 보니 삼성과 ‘갑·을’ 관계를 맺은 인근 협력업체와의 검은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협력업체는 현직 직원과의 관계유지나 퇴직한 삼성 간부들을 영입하기 위해 웃돈을 건네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삼성 측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내부적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준법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의 위 기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과 협력업체간 검은 거래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인용된 사례는 크게 세 건이다. 삼성전자 전 수석엔지니어인 A씨가 2차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의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이 첫째 사례다. 두 번째는 전직 삼성전자 사원 B씨가 삼성전자의 또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고소사건으로 수사상황을 지켜 봐야 할 사안이다. 나머지 사례는 삼성과 협력업체간 검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인데 ‘알려졌다’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로 혐의점이 드러난 사례는 1건 뿐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최근 수억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직 삼성전자 사원이 천안지역 관련 협력업체에 사장으로 영입돼 비난을 사는 가운데』라는 기술내용과 이 한 건을 근거로 「‘뇌물의 제왕’ 삼성직원 또 췌졌다」는 제목을 달아 삼성직원 일반을 ‘뇌물의 제왕’으로 단정했다. 이 경우에 ‘제왕’이라는 표

현은 '어떤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존재'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의 내용만으로 볼 때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비약이며 사실과 거리가 있는 과장이다. 더구나 기사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